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20230295	홈페이지 예정
	최초 등록일	2023-02-21	
	최종 등록일	2023-02-21	

라리엔 정보공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라리엔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50, 17층 1716호(을지로2가, 을지 한국빌딩)

■대표전화번호

비공개

■대표e-mail vogue6619@naver.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개년도 말라리엔 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形)의 선고

IV. 가맹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 활동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 · 훈련의 주체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라뷰티컴퍼니	라리엔	서울시 중구 을지로 50,17층1716호(을지로2가,을지 한국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10.25	2012.10.31	노현민	비공개	-
	법인등록번호	110111-4988353	사업자등록번호	220-88-47228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노현민	라리엔	서울시 중구 을지로 50,17층1716호(을지로2가,을지 한국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노현민	비공개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라리엔	없 음
상 호	라리엔OO점	없 음
상표(서비스표)		출원 상품분류 10 판 44 류: 410364498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56,527	316,649	39,878	201,700	28,997	30,866
2022년	357,068	266,932	90,136	203,395	44,062	50,257
2023년	353,086	215,050	138,035	210,628	55,239	47,899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5.의 매출액과 같음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개인 사업 경영
가맹사업 관련 임원	노현민	대표이사	2012.10.25.~	대표	경영기획 총괄	
	윤선정	사내이사	2012.10.25.~	이사	매장관리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2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귀하가 당사의 라리엔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사용허가일)
라리엔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2016.07.04	출원 상품분류 10 판 44 류: 4103644980000	라뷰티컴퍼니 (노현민)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 저작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 2023.01.01

-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7.05.04
- 2023.12월 말 기준으로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있음

2. 가맹사업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라뷰티컴퍼니	라리엔	노현민	개시 예정	서울시 중구 을지로 50,17층1716호(을지로2가.을지 한국빌딩)

3.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라리엔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비스업	이미용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	4	1	1	0	1	1	0	1
서울	3	2	1	1	0	1	1	0	1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	1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1	1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개년도 말 라리엔의 가맹점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0	4	-	-	-	4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라리엔]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 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4	620,551	16,649	1,088,397	27,210	468,784	8,236	3곳 해당
서울	2	해당 없음						5곳 미만
부산	0	해당 없음						5곳 미만
대구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인천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광주	0	해당 없음						5곳 미만
대전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울산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세종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기	1	해당 없음						5곳 미만
강원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충북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충남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북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남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북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남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제주	0	해당 없음						5곳 미만

※해당 영업 표지는 가맹점이 5곳 미만임.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라리엔』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	29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라리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 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8.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및 판촉	비공개	비공개	2,984	2,984	-	

11. 가맹금 예치

- 당사의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시행 중입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증권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라뷰티컴퍼니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24,300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 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라리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계약이행)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가맹금 내역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	계약체결일	당사가 가맹 사업법에 의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	
교육비 (가맹점주 입문교육 및 실습 교육)	3,300	계약체결일	훈련시작 1일 전 계약해지	훈련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14,300(vat 포함)				

2) 보증금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계약 체결일	계속가맹금 및 계약종료후의 조치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1.계약종료 시 잔존 채무액을 공제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비	11,0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10,000	부가세 없음 보증보험가입
합계		24,3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제외)

구분	지급 대상	금액 40평 (132.㎡)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31,000	3,275			*현장 실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미지정	88,000	2,200	별도 계약	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내부공사
필수설비	미지정	22,000	550	별도 계약	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초도물품	미지정	15,000	375	별도 계약	물품 공급 7일 이전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간판/사인	미지정	6,000	150	별도 계약	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 규모 및 물가 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 외장공사,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냉난방기 공사, 전면 유리 및 샷시 공사, 어닝, 소

방공사, 전기증설 공사, 상하수도 공사, 가스공사, 전기증설 공사, 음향시시설, 보안공사, 화장실 등은 별도로 실비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디자인 및 설계에 대한 노하우 전수의 대가로 3.3㎡(1평) 기준으로 일금 **이십이만원(220,000원, 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라리엔 영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규정하는 개념트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 등 귀하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제8조 이행을 위해 "가맹본부"에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하며, 이 위약금은 계약체결 준비를 위해 지출된 "가맹본부"의 경비 등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에 본 계약을 해약하였을 때

1. '가맹본부'가 최초교육·시설공사·집기·설비의 설치작업에 착수하기 전 금액
가. 최초교육 진행 중인 경우 가맹비 중 영업방법 전수비 330백만원
나. 최초교육 진행 전인 경우 해당 없음
다. 시설공사·집기·설비 설치 전 설치준비 소요금액
2. '가맹본부'가 시설공사·집기·설비의 설치작업에 착수한 금액
가. 시설공사·집기·설비 설치의 공정별 금액 대비 공정진행 소요금액
3. '가맹본부'가 점포 선정 과정에 소요된 모든 제반 용역비를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한다.
가. 제반 용역명세: 출장비(교통비, 숙식비, 인건비, 기타 비용)
4. '가맹본부'가 매장 실측후 계약 해지 된 경우 실측 과정에 소요된 모든 제반 용역비를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한다.
가. 제반 용역명세: 출장비(교통비, 숙식비, 인건비, 기타 비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	1)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입지 안내 → 가맹희망자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가맹점의 입지에 대해 조언을 하며, 입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합니다. 이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직원에게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가맹점 입지 (제3자와 체결한 점포, 장비, 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를 선정하였으므로 입지 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이미용 면허증 소지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 19세 이상일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라리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물품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Running Royalty)	가맹본부	총매출액(카드매출+현금매출) × 2.2%	익월 5일	후불로 반환 없음		-가맹점의 월매출산정은 1일~말일까지 금액월 익월 15일까지 납부 -부가세 포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별료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광고시행 후	정보공개서 p.45 참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료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판촉시행 후	정보공개서 p.45 참고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없음		VII.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교체, 변경 3일전	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협의 결정
수시 및 정기 교육비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교육실시 7일전	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특별 교육비(파견)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실시 7일전	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	교체·보수 3일전	없음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를 감안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없음		일체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 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 기간,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라리엔」가맹점을 운영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도 예정일 2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 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거절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가맹점 운영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수인(이하 ‘양수인’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계약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을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합니다.

- 상속인에 대해서는 일부 최초가맹금(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됩니다. 단, 교육비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금 삼백삼십만(₩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 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라리엔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별첨 참조

- 귀하는 당사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권유 기준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라리엔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라리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는 라리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 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제공상품 일체	① 당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별 교육 매뉴얼에 따르며, 본사 영업표지가 부착된 집기에서 만 제공할 것 ②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③ 판매를 원할 경우 본사와 협 의 후 서면 동의를 받을 것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
다.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주재료와 부재료는 가맹본부와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시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구성과 품질을 낼 수 있어야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라리엔의 타 가맹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및 상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제 3 자 유통업체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
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커트	30,000~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유선	2023.12월 말 기준
베이직펌	110,000~		
셋팅펌	150,000~		
베이직염색	120,000~		
프리미엄염색	140,000~		
베이직클리닉	100,000		
프리미엄클리닉	132,000		

-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 및 합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이미용업의 서비스 업종	라리엔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가맹점 사업자’가 선택한 영업지역에 대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을 중심으로 하여 ‘가맹본부’의 상권조사 분석 방법 기준에 따라 물리적 장애 및 심리적 장애 요인을 종합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가. 물리적 장애: 4차선 이상의 도로(차량속도 30km), APT, 학교의 외벽, 하천, 고가도로, 산, 공원, 철도, 지하도와 같이 도보 통행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접근에 장애를 주는 것들을 구분. 나. 심리적인 장애물: 보행 시 위험을 느끼는 외벽, 경사도로(15~20℃) 이루어진 오르막길, 통행인이 한적 하고 기타 요인들로 통행인의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경계지점. 다. 사회,문화적인 장애물: 관습에 의한 사람들의 이동구획이 지어지는 경향 구분. 라. 경제적인 장애물: 소득수준에 따라 이동이 구획되는 경향 구분.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	특수상권 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수요가 현저하게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지역 변경(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라리엔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라리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 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9.8%	10.2%	0%	0%

- 가맹점 중 1개 매장은 6개월 미만으로써 매출액 산출에서 제외하여, 위 비중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 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라리엔 가맹사업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 ②, 아니오 → 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 ④, 아니오 →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⑤, 아니오 →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C, 아니오 → 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 → B, 아니오 → 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 E, 아니오 → 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 상의 가맹금 및 협력업체 채무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7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 ·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37조)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 및 계속가맹금 (Running Royalty) 등의 금전적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매출 정보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상품 종류, 판매방법 및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을 제3자 또는 타 가맹점에 재판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훼손 및 변경, 양도, 영업상 신뢰 훼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비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정기, 수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운영 매뉴얼 및 세부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분담하는 판촉 및 홍보비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5조(가맹점운영권의 제한) 각호의 위반이 있는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위치를 변경하거나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 기타 신의칙에 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37조)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경우 1항의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14조 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 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 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 비용, 개점 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라리엔」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도 예정일 2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거절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가맹점운영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수인(이하‘양수인’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점시 영업활동 지원비, 운영 매뉴얼 제공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계약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합니다.

◦ 상속인에 대해서는 일부 최초가맹금(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됩니다. 단, 교육비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금 삼백삼십만(₩3,300,000)원(부가세 포함)을‘가맹본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 절차와 동일	- 최초가맹금 면제(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 교육훈련비용 납부(3,300,000원) - 교육훈련 이수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 교육훈련에 관한 이수 - 교육훈련비용 납부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가맹계약의 존속 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독립 점포 및 타사 가맹점, 가맹본부 운영을 포함한다)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라리엔』와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이미용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라리엔의 영업시간 및 영업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30 ~ 20:00	매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2월의 경우 24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고 사전 승인 필요로 함 문의 : 가맹본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규정상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 점포 (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 방식이 상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 없음	직접 근무	영업이 가능한 인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 (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라리엔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광고의 경우 (a),(b)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각각의 동의율이 50%, 25%를 넘는 경우, 광고 집행 기간내 운영중인 가맹점사업자는 모두 광고에 참여 하여야 하며, 비용은 지역별 가맹점별로 1/N을 하여 분담 한다.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개별행사	없음	판촉비의 100%	가맹본부 사전승인	단독행사

-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를 시행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당사와 사전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39조 및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23조(자점매입)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자점매입 (사입)한 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매출액 대비 평균적 필수(강제)품목 소요량을 산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종료시 제38조 제①항 제1호 또는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그 의무 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배상금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가맹본부’가 지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6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시 7일),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체결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체결	D-30~29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9~26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5~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8~1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 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

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간판 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드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

	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가맹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의 후 개별계약체결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 부담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 후 개별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라리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라리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점 전 교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개점 후 교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라리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8 일(34h)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디자인, 인턴, CS 관리자)
수시 교육	1 일(2~4h)	실비 발생 시 청구	종업원 입사
특별 교육	1 일(2~4h)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추가교육	3 일(9h)	1,650	추가교육 요청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개점시 신규 오픈 교육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와 종업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점 종업원이나 관리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6년 7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10,628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2023년도는 표준 손익 계산서의 매출임

< 정보 공개 서 내 용 문 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2023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원부재료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3.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별첨 4.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수령확인서

[*주의 : 성명, 수령일시와 수령 장소 등 반드시 자필기재]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수 령 일 시	20 년 월 일 시	수 령 장 소	
제 공 받 은 사 실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정보공개서 주요 목차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 계약자와 수령자가 상이한 경우, 계약자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